

#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23.  
행정소방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7월 2일
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7월 8일

3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
제282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(2009. 7. 13.)
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신동인)

### 1. 제안이유

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충청북도 지역 내 통합방위 상황 재해재난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임무수행은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)

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기능과 절차, 그리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의 활용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를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#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 Ⅴ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### Ⅵ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### Ⅶ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, 및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“로, ”인“을 각각 ”명“으로, ”사고가 있을“을 ”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“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충청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충청북도지사, 제37보병사단장,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에규에 의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원본부”를 “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”지원본부“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, 및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법 제5조제8항 제5호에서 "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취약지역 대비책</li> <li>2. 통제구역 설정</li> <li>3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</li> </ol>	<p>〈삭 제〉</p>
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<u>부득이한 사유로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~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충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운영 및 업무의 처리 절차는 충청북도지사, 제37보병사단장,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.</p>
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<u>지원본부를 둔다.</u></p> <p>②~⑥ &lt;생략&gt;</p>	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<u>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"지원본부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~⑥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
<p>제5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 기적 신고훈련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 활동의 실시</p> <p>2.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예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.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.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시간에 한한다) 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</p> <p>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</p>	<p>제5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 기적 신고훈련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 활동의 실시</p> <p>2.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예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.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.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시간에 한한다) 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</p> <p>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</p>
--	---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통합방위법

제5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)

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통합방위지침(대통령훈령 제28호)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대책)
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5조·제9조·제17조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